

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- 125호

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창원시의회의장

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제정이유

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(안 제3조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
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(전화:055-225-5375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jeonhr1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우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5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17.

발 의 의 원 : 이우완 · 김남수 · 김묘정 · 김상현 · 문순규
박해정 · 백승규 · 서명일 · 심영석 · 오은옥
이원주 · 이종화 · 진형익 · 한은정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

나. 관계 법령

다. 현행 조례

창원시 조례 제 호

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 고**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설치 등) ①·② (생략)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제3조(기금의 설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.

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
제24조의2(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·협력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·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·협력을 증진하고, 관련 정책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■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창원시 차원에서 지원하고,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이란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·학술·체육·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 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시와 시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
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3.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해·재난 및 기근·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
4.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「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12.>

③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 운용의 계획·변경에 관한 사항
2.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기금의 회계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. <개정 2022. 10. 7.>

1. 기금운용관: 남북교류협력업무 주무부서장
2. 기금출납원: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

제7조(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운용·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·조정
2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
3. 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시장이 되고, 나머지 1명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,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·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공동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회의)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수당 등)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「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29.>

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